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목 차>

1.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 성 자	이름	송민호
	담당부서 (과)	평생 학습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예혜란		연락처	044-203-6382
	과장	민미홍		이메일	zmflqh97@korea.kr

2026. 09. 0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예혜란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2.규제조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3.위임법령	평생교육법 제27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4~2026.10.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으로서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기획·교수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역량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 국가자격의 공공성, 평생교육서비스의 질과 학습자의 권익보호를 고려할 때,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과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주기적인 보수교육 도입이 필요함 ○ '26.6.2.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가 2년마다 15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 ○ 병역·질병·임신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박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td><td>평생교육사 약 6,811명</td></tr><tr><td>이해관계자</td><td>한국평생교육사협회</td><td>5분과, 광역지부, 기초지회 등</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약 6,811명	이해관계자	한국평생교육사협회	5분과, 광역지부, 기초지회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약 6,811명											
이해관계자	한국평생교육사협회	5분과, 광역지부, 기초지회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정기적인 보수교육으로 평생교육사의 직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임 ○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학습자의 만족도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규제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움	사회적 편익 달성 가능 기대									
		주요내용	－ (피규제 소상공인) 본 규제는 평생교육사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규제로 규제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움										

			- (피규제 일반국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편익 달성 기대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 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생 략) <u><신 설></u>	제8조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은 평생교육기관등에서 해당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등에서 평생교육 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현 행	개 정 안
	<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는 평생교육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u> <u>제8조의3(보수교육기관) ① 법 제27조의 2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수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② 보수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보수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 <u>1. 교육 이수여부가 명시된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u> <u>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u> <u>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현 행	개 정 안
	④ 보수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임
- 평생교육사는 다양한 연령과 학습배경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직무역량은 개별 종사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과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익에도 영향을 미침
- 그러나 현행 제도는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이후 상위 등급의 자격 취득을 위한 승급과정을 제외하면,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과 직무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토록 하는 보수교육 체계가 없음
- 특히 평생교육사의 근무 기관 및 담당업무가 다양하고 기관별 교육여건에도 차이가 있어, 개별 평생교육기관이나 종사자의 자율적인 교육에만 의존할 경우 교육 여부와 내용·수준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자격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평생교육사 교육 자체
	내용	- 평생교육사가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
규제대안1	대안명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기준
	내용	- 평생교육기관에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 대상으로 2년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기준 제시 - 보수교육 대상 중 병역·질병·임신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박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등은 면제하는 기준 제시
규제대안2	대안명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유예 기준
	내용	- 보수교육 대상 중 병역·질병·임신 등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휴직 처리된 사람은 유예하여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기준 제시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평생교육사가 필요에 따라 교육 이수가 가능	- 평생교육 제도 변화에 따른 전문성 유지 어려움 등
규제대안1	- 표준화된 양질의 교육을 전국에 균일하게 제공 - 2년마다 15시간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 전문성 향상도모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면제 가능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를 최소화 함	
규제대안 2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유예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를 최소화 함 - 휴직한 후 복귀한 평생교육사의 업무 적응 속도를 높여 현장 공백 최소화 함	- 병역·질병·임신 등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휴직 처리된 사람이 업무 복귀 시 추가 교육에 대한 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평생교육사협회	2026.8.3.(월) / 전자메일 / 의견조회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재 평생교육사가 개인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수도권에 평생교육기관이 집중되어 교육의 불평등 발생과 업무 관련 교육 부재로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규제대안 1을 도입하여 표준화된 양질의 교육을 전국에 균일하게 제공하고, 2년마다 1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 병역·질병·임신·출산·휴직 등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와 평생교육 전공 대학원 재학자 등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규제 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3. 규제목표

- 2026.6.2. 「평생교육법」 개정·시행하는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해당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여 평생교육사 전문성 향상을 통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과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평생교육사가 2년마다 15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업무 수행(평생교육의 기획·교수 업무 등)을 위해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타당함
※ 유사 직종인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을, 청소년지도사는 2년마다 1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 중
- 또한 병역·질병·임신·출산·휴직 등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와 평생교육 전공 대학원 재학자 등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규제 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청소년 기본법」 제24조2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하여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2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평생교육사 교육 자체>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평생교육사 교육 자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은 관련 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청해 온 사항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편임
- 또한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하고 교육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여 교육 이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 병역·질병·임신·출산·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부에서 행정적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재정적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법」 개정('26.6.2.)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운영 방안 연구 추진('26.6.~12., 국평원)
-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6.6.~8.)
-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26.10.)

2. 향후 평가계획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법령 시행('27.1.1. 예정) 후 보수교육 이수율 등 평가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종합결론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은 국가자격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관리와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보수교육의 대상·주기 및 면제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보수교육을 2년마다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은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등 유사 국가자격의 보수교육 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으며,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유지·향상을 위한 적절한 수준임
- 또한 병역·질병·임신·출산·휴직 등 일정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 따라서 동 규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교육주기·시간 및 면제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규제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평생교육사 교육 자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평생교육사 교육 자체>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		
활동제목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이수		
비용항목	기타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2035	0	0
	2036	0	0
	합계	0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	산식설명	산식
	2027	해당 없음	0
	2028	해당 없음	0
	2029	해당 없음	0
	2030	해당 없음	0
	2031	해당 없음	0
	2032	해당 없음	0
	2033	해당 없음	0
	2034	해당 없음	0
	2035	해당 없음	0
	2036	해당 없음	0
근거설명	○ 본 규제는 평생교육사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로 규제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움 ○ 피규제자 측면에서는 2년마다 15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나, - 이는 평생교육기관에 반드시 배치되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임
--	---

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전 국민		
활동제목	전문성 있는 평생교육 수업권 확보		
편익항목	기타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2035	0	0
	2036	0	0
	합계	0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	산식 설명	산식
	2027	해당 없음	0
	2028	해당 없음	0
	2029	해당 없음	0
	2030	해당 없음	0
	2031	해당 없음	0
	2032	해당 없음	0
	2033	해당 없음	0
	2034	해당 없음	0
	2035	해당 없음	0
	2036	해당 없음	0
근거설명	o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평생교육을 학습하며 삶의 질을 향상		

	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